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5.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5. 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9. 5. 8

다. 상정일자 :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9. 5.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창열 교통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의 향상,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선거인 투표참여의 촉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경감규정을 신설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중 비고 내용 제14호를 제19호로 변경
- 2)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중 비고 내용 제15호를 제14호로 하고 할인을 상향(20% ⇨ 30%)
- 3)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중 비고 내용 신설

- (가)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의 영수증 및 시장 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나) 공직선거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
- (다) 다동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
-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3. 검토보고의 요지 (신승관 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제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투표율 향상 및 출산장려 정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경감해 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이라 사료되나, 감면대상 및 감면 폭의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체납관리 및 주차장 시설의 확대 등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우리구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세대는 519세대이고, 5·18 민주유공자는 28명이며, 2009년도 1/4분기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주차요금 할인차량은 1,053대에 할인요금은 369만 5천원이었음,

1/4분기 공영주차장 이용은 141,140대로 주차요금은 4억 5,670만 9천원이었으며, 이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본 조례에 의한 할인은 13,268대 3,159만 8천원으로 전체 주차요금의 약 7%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